의안번호	제305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377회)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31일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305호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에 따라,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(재)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

○ 대 상 :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
○ 사용기관(도 출연기관) : (재)충북문화재단

○ 감면내역 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
○ 적용시기 : 2020. 1. 1. 부터

○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

□ (재)충북문화재단 출연기관 현황

○ 설 립 일 : 2011. 11. 30.

○ 설립목적 :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개발・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

○ 주요사업

- 문화예술의 창작・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
- 전통문화예술 계승・발전 사업
- 문화・예술・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・자문 및 교육・연구 사업
- 국내・외 문화예술 교류사업
-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
- 문화・예술・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
-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

○ 소 재 지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(우암동)

○ 사용면적 : 370㎡

○ 적용시기 : 2020. 1. 1.부터

3. 관계법령 : 붙임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2.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
3. **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**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**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□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
2. 전통문화예술 계승·발전 사업
3.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
4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사업
5.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
6.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
7.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
8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기본기금의 조성 등)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조성한다.

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도·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
3. 개인·기관·단체의 출연금
4. 기금의 운영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,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별첨]

출연기관 사용료 납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연도	사용면적	사 용 료	비 고
계			35,859	
(재)충북문화재단	2017	370㎡	11,084	
	2018		12,004	
	2019		12,771	